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조명래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통합환경관리 대상이 되는 복합업종 사업장의 대상 시설을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취지에 맞게 명확화하고, 변경허가 대상으로 규정된 일부 사항 중 허가 검토에 준하는 중요 변경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신고 대상으로 합리화하여 사업장 부담과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복합업종 대상 시설 명확화

복합업종의 경우 기준서 준비상황, 오염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일부 배출시설에 대한 제외 근거 마련

### 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 합리화

법의 취지에 맞추어 사업장 허가조건의 재검토와 관련된 중요 변경사항만 변경허가로 정비, 기타 단순 변경사항을 변경신고 대상으로 정비

### 다. 초과 부과금 산정방법 합리화

자체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초과배출부과금 산정 시 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를 1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

####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  
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통합관리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의 배출시설등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고려하여 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가. 대상으로 하지 않는 업종의 산출물 부가가치가 전체 사업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높을 것
- 나. 대상으로 하지 않는 업종 시설에의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적용 가능성이 없거나 적을 것
- 다. 대상으로 하지 않는 업종의 통합 관리 필요성이 낮을 것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등 외에 새로운 오염물질등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배출시설등을 신설(사업장에서 설치·운영 중인 배출시설등과 다른 종류의 배출시설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증설(사업장에서 설치·운영 중인 배출시설등과 같은 종류의

배출시설등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그 규모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교체 또는 변경하거나 연료·원료·부원료·제조공정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그 신설, 증설, 교체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허가 배출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등 외에 새로운 대기오염물질 또는 수질 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경우.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2 제3호의 가목 및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다목부터 차목을 삭제한다.

가.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라 한다)과 그 시설에 연결된 배출구를 신설하거나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나. 법 제2조제2호사목의 폐수배출시설(이하 "폐수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신설하거나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별표 2 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3 제1호의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가목의 "증설, 교체, 폐쇄 또는 변경"을 "신설, 증설, 교체, 폐쇄 또는 변경"으로 하고, 14)의 "폐기물

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만 해당한다)을”을 “폐기물처리시설을”로 하며, 15)부터 2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법 제2조제2호가목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이하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신설하는 경우

16) 법 제2조제2호다목의 대기오염물질을 비산배출하는 배출시설(이하 “비산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신설하는 경우

17) 법 제2조제2호라목의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경우

18) 법 제2조제2호마목의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19) 「물환경보전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20) 「악취방지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악취관리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법 제2조제2호아목의 악취배출시설(이하 “악취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신설하거나 법 제2조제1호바목의 악취 중 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된 것 외에 새로운 악취를 배출하는 악취배출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21) 법 제2조제2호차목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라 한다)을 신설하는 경우

22)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이 지정·고시될 때(같은 항 제2호의 대기환경 규제지역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실천계획이 고시될 때를 말한다)에 그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23)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추가로 고시된 경우로서 같은 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그 추가된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24) 「악취방지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을 지정·고시할 당시 그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또는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같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추가로 지정·고시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별표3 제1호 다목의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별표3 제2호의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아목 및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허가 또는 변경허가 당시 예측하지 못하였던 오염물질등이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농도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경우로서 허가조건을 새로 설정하여 배출구에서 주기적으로 오염도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자. 아목에 따른 측정 결과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별표8 제1호 라목의 비고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0조제1항에 따른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중의 허가배출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를 1로 본다.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통합허가제도과	
연 락 처	(044) 201-6717